

협회 소식

사이버 방사선안전정보센터 개설 (<http://rinet.kins.re.kr>)



과학기술부는 정보통신부와 협조하여 정부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98년도부터 2001년 까지 방사성물질 사용관련 인허가 및 안전관리업무를 지원하는 통합정보망 구축사업을 과제별로 추진하고 있다.

1차 과제로 RI등의 수입 및 생산에서 사용자에게 이동되는 일련의 기본체계와 사용기관의 각종 인허가 현황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개발되었고, 2차 과제로는 2000년 5월까지

인터넷을 통한 민원안내를 지원하는 사이버방사선안전정보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금번 개발된 사이버방사선안전정보시스템은 「민원안내」, 「질문과 답변」, 「RI정보광장」, 「사용자광장」, 「원자력관계면허시험」, 「관련사이트」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메뉴를 살펴보면 「민원안내」에는 RI사용허가 절차 및 민원문서 처리절차를 소개하였고, 「질문과 답변」은 유형별 질문사항과 답변을 볼 수 있다. 「RI정보광장」에는 핵종정보, 검사지적유형 및 각종 정보등을 검색할 수 있으며, 그밖에 「사용자광장」에는 RI이용과 관련된 자료 및 사용자들간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이 있다.

또한, 「원자력관계 면허시험」에는 방사선관련 면허종류, 응시자격, 시험공고 및 관련자료등을 검색할 수 있다.

아울러 최종단계인 3차과제는 방사성동위원회의 취득, 사용, 이동 및 폐기등 인벤토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적할 수 있는 “방사선안전관리 기반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다.

원자력산업실태조사 실시

한국방사성동위원회부설 동위원회교육연구원은 제5회 원자력산업실태조사중 “방사성동위원회 및 방사선 이용에 따른 안전성조사”에 대한 실태조사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의 기간은 5월15일부터 11월30일까지이며, 제4회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효과 조사는 서울대공학연구소가 실시하고 동위원회교육연구원은 방사성동위원회에 대한 이용실태를 파악

협회 소식

하고 그에 대한 자료의 수집을 하여 분석함으로써 방사선이용의 국가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금번 조사도 방사선 이용기간에 대한 실태조사후 8월15일까지 중간보고서를 만들고 몇번의 수정과 검증을 거쳐 12월달까지 최종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고, 최종 보고서 제작이 완료되는 데로 원자력산업실태조사에 참여한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원자력법 시행규칙 개정

■ 시행규칙 개정 주요골자

- 원자로시설(原子爐施設) 등의 건설 및 운영허가, 원자로시설의 해체승인 등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출서류 및 그 작성지침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내지 제20조).
- 과학기술부의 고시로 규정하고 있던 발전용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과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의 정기검사(定期檢查)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 부령에서 정하여 원자로의 안전과 관련된 검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함과 동시에 다른 검사와의 형평을 도모하도록 함(제21조).
- 정련사업(精鍊事業) · 가공사업(加工事業) 및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使用後核燃料處理事業)의 허가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제출서류 및 그 작성지침 기타 이들 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 운영 및 정기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9조 · 제37조 및 제45조).
- 방사성동위원소(放射性同位元素) 등의 사용을 위한 허가신청시 제출하는 방사선안전 관리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구체적 내용과 그 작성지침 등 허가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출서류 등을 정함(제54조 및 제58조).
- 방사선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방사선안전관리업무를 업무대행자(業務代行者)가 대행할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대행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업무대행자가 방사선안전관리업무 수행 후 제출하는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될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무의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함(제69조 및 제72조).
- 방사선기기(放射線器機)의 설계승인에 필요한 사항과 그 작성지침을 정하고, 방사선기기 및 수입방사선기기에 대한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4조 · 제76조 및 제77조).
- 방사성폐기시설(放射性廢棄施設) 등의 건설 · 운영을 위한 허가신청, 사용전 검사 및 정기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9조 내지 제89조).
- 방사성물질(放射性物質)을 포장 · 운반하고자하거나 운반용기의 설계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과 제출서류 및 그 작성지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90조 내지 제99조).
- 원자력관계종사자의 면허시험 ·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00조 내지 106조).
※ 협회는 2000.5.27일자로 공포된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요약하여 6월말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또한 원자력법령집을 제작하여 단체회원사에 배포할 계획이다.

● 협회 소식

■ 원자력법령과 관계규정의 구성

[법령체계]

원 자 력 법

국민의 권리, 자유와 방사선 안전 및 방호에 관련되는 직접적, 기본적, 선원적 사항 규정

(국회)

원 자 력 법 시 행령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대통령)

원자력법시행규칙 및 부령

동법,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과기부)

과 학 기 술 부 고 시

법령 및 규칙에서 위임하는 세부사항 등을 규정

(과기부)

● 신문속의 RI뉴스

■ 방사성동위원소 인허가, 인터넷 통해 처리 가능 ■

방사성동위원소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과 면허 신청등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부는 최근 방사성 동위원소 관련 민원안내 접수시스템 (rinet.kins.re.kr) 와 안전관리지원 시스템 (isotope.kins.re.kr) 을 구축, 운영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에따라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은 관련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됐다.

또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면허를 신청하려는 사람도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고 합격자 발표까지 볼 수 있게된다.

방사성동위원소 통합정보망이 구축되는 내년 5월에는 국내 1천6백여개 기관에서 사용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허가 취득 사용 폐기의 전 과정을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할 수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경제 2000/05/10〉